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3.4.28.(월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4월 18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4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3. 4. 28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「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」의 정원이 승인됨  
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를 2,503명에서 2,522명으로 조정 (증원 19명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43명 ⇒ 1,462명 (증원 19명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(변동없음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청남대의 소유·관리권 이관이 합의됨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, 이를 유지 관리할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시설물의 관리 및 경비,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『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』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를 2,503명에서 2,522명으로 조정 (증원 19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43명 ⇒ 1,462명 (증원 19명)
 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 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(변동없음)

의안전문 : 별 첨

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03명”을 “2,522명”으로 하고,  
동조제1호중 “1,443명”을 “1,462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50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43명</p> <p>2. 내지 4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.....            ..... <u>2,522명</u> .....            .....</p> <p>1. .... : <u>1,462명</u></p> <p>2. 내지 4 (현행과 같음)</p>

<b>관련법령 발췌</b>
----------------

 지방자치법

**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**제21조 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